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862 판결 [구상금등 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550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862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수경

변론 종결2019. 5. 16.

판결 선고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서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6. 4. 8. 24:00부터 2017. 4. 8. 24:00까지로 정하여 전세버스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D은 2016. 10. 13. 22:10경 승객 19명을 태우고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40.8km 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기점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1차로를 질주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언양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급제동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2대의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버스는 속도로 인한 쓸림 현상을 이기지 못하여 버스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 2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수차례 들이받고, 이 사건 버스와 방호벽의 충돌·마찰로 인해 불꽃이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연료 등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이 사건 버스에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버스에 탑승 중이던 승객 중 E 등 10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그 자리에서 버스 화재로 인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에게 아래 표 '일실이익', '위자료'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 또는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F	2017. 7. 19.		70,000,000	120,000,000	울산 2016가합2297
2	G	14,716,896	70,000,000			
3	H	2017. 7. 19.	1,497,406	70,000,000	70,000,000	울산 2016가합2303
4	I	2017. 7. 19.	17,589,590	70,000,000	80,000,000	울산 2016가합2273
5	J	2017. 7. 19.	49,082,059	70,000,000	80,000,000	울산 2016가합2259
6	K	2017. 8. 11.		70,000,000	90,000,000	울산 2016가합2266, 2016가합2280(병합), 2016가합2310(병합)
7	L		70,000,000			
8	E	191,852,120	70,000,000			
9	M	94,605,651	70,000,000	60,000,000		
10	N	20,439,707	70,000,000			

마. 원고는 위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과 별개로 2016. 10. 15.부터 2016. 10. 27.까지 장례비용으로 260,446,100원, 사체안치비용으로 950만 원을 각 지출하고, 2016. 10. 31.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형사위로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7. 8. 21.까지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위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 1,731,494,000원을 지급하고, 2017. 11. 10.부터 2017. 11. 13.까지 원고에게 장례비 3,000만 원(= 300만 원 × 10명)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전세버스공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 지급공제금 =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1. 장례비 - 지급액 300만 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만 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4,000만 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1인 당	500	300	200	100	100
------	-----	-----	-----	-----	-----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항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나).2).항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항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례비용 260,446,100원, 사체안치비용 950만 원, 위자료 6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 및 전세버스 업계에 큰 악영향을 주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고, 피고는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위 장례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외에 위 장례비용, 사체안치비용 및 위자료 중 330,053,900원을 합한 합계 6억 원(= 260,446,100 + 950만 원 + 330,05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에서 피고는 조합원에게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위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에게 일실회익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 또는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위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가 포함된 1,731,494,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정한 장례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호채

판사장성신

판사남승정